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05호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에 따라 매년 철강·카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중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5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안전운송원가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20, 4025 (팩스 044-201-5601)

- 전자우편(이메일) : myhwpo100@korea.kr

3.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